

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[인력양성] 신규과제 공고(안)

2025년 「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(인력양성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1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 사업개요

-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운영
 - 기회발전특구별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으로 특구 투자기업의 안정적 인력 공급에 기여
 -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재직자·신규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

2 사업내용

- 사업 기간 : 2025. 3. ~ 2025. 11. (9개월)
- 지원 예산(국비) : 3,500백만원 (국비 66.6% 지원)
- 지원 규모 : 총 7개 과제 내외

※ 지원규모(과제 수) 및 지원예산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- **지원유형** : 과제당 유형 선택(단일 또는 복수) 후 신청
 - 특구별 교육생 최소 인원은 **50명 이상**
 - 교육유형은 ①재직자 교육 ②신규 인력양성으로 구분
 - * 유형별 최소 20명 이상 신청 가능하며, 유형 ①+② 혼합가능
- ※ (사업비 예시) 교육생 150명 신청시, 국비 250백만원, 지방비 125백만원 지원 단, 지방비는 비수도권 광역 시·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며, 복수의 기초 지자체 공동부담도 가능
- **신청주체** :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14개 시·도이며, 기초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은 광역 지자체를 통해 신청
- **지원 내용** :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, 사업운영비 등
 - (주관기관) 특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·개발 및 교육 운영비 등 지원
 - (수혜기업) 특구 기업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및 인력 연계 지원
 - (교육생) 특구 내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 지원

지원 대상	정의	
주관기관	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특구기업 '재직자 대상 교육 개발 및 운영' 및 '신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행'이 가능한 국내 비영리기관(대학, 연구원, 협·단체 등)	
교육생	재직자	· 기회발전특구 투자(예정)기업에 근무 중인 재직자 · 산단 및 부지 미조성 특구일 경우, 특구 외 투자사업장의 기존 재직자
	신규 전문인력	· 기회발전특구 투자(예정)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규 인력

* 동 사업은 '인력양성' 사업으로, 별도 연구시설·장비 구축을 지원하지 않기에, 주관기관은 기보유 중인 교육 인프라(교육장, 보유시설 및 장비 등) 제시 필요

□ **교육과정** (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 요망)

○ (재직자 교육)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**맞춤형 기술교육** 개발·운영

* (예시) 생성형AI 활용 업무 자동화 교육 / 자율주행 전장 부품개발(이론, 실습) / 배터리 셀 설계 및 평가 인력교육/ 해상풍력구조물 제작·설치 안전프로세스 교육

○ (신규 인력양성)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인력수요 기반으로 지역 대학(고교) 등 교육기관 연계형 **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** 개발·운영

* (예시) 미래모빌리티 전환 부품 전문 기술인력 교육/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/ 석유화학산단 취업연계형 인력 양성/ 배터리 셀 제조, 반도체 제조 인력양성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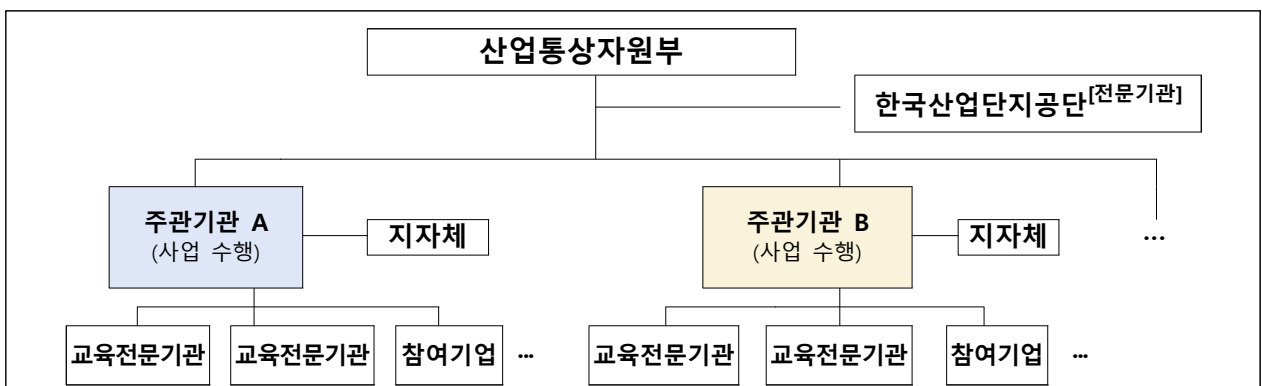
□ **교육시간** : 투자기업별 기존 재직자 및 신규 채용인력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**자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 가능**

* (교육시간 예시) 기본직무교육 20시간, 심화교육(전문기술 교육) 40시간 등

□ **추진체계** : 산업부^(총괄)→한국산업단지공단^(전문)→지자체→수행기관

○ **과제의 성격·규모**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교육 전문기관 참여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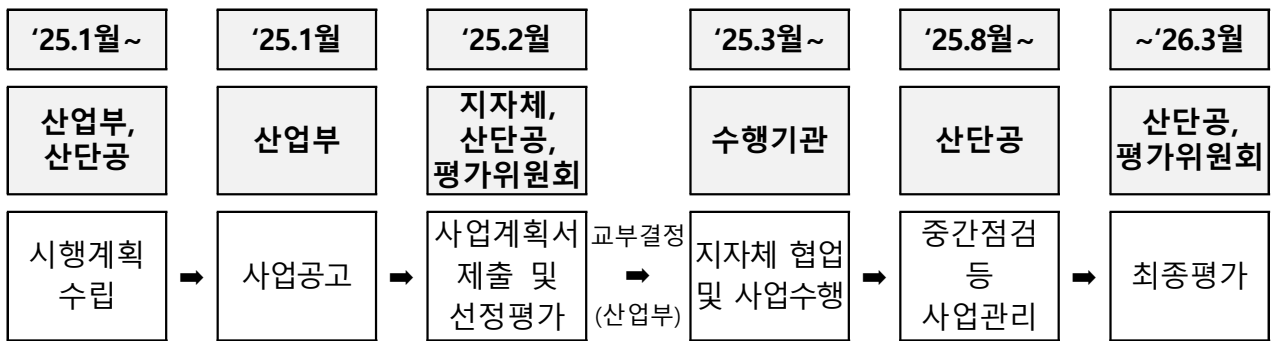
○ 교육전문기관은 지역 소재 대학, 고등학교, 연구원, 인력양성 전문 교육기관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



○ 주체별 역할

구 분	주요 역할
산업통상자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, 예산 교부 ○ 전문기관 사업관리 모니터링
한국산업단지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요맞춤형 사업관리(선정/최종 평가 등) ○ 지원사업 관리(진도점검, 사업비 집행 관리 등) ○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평가관리 방안 수립
지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기획 ○ 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재직자, 신규 인력 양성 계획 수립 ○ 수행기관과 협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
수행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수행(전문교육 수행, 채용연계 등) ○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교육생 모집, 사후관리 등

□ 추진 절차



- (주관기관)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기존 재직자 및 예비 취업자 등 교육생 모집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
 - (참여조건) 해당 지역 내 교육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
- (수혜기업)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(예정)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 기존 재직자 교육 및 신규 인력 채용 수요를 보유한 기업
 - (참여조건)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*
 - *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서에 미포함된 기업은 MOU, 입주의향서 등 증빙 필요
 - * 산단 및 부지 미조성 특구일 경우, 특구 외 투자사업장의 기존 재직자 교육 가능하며, 신규 인력의 경우 특구 내 투자사업장의 채용 예정 인력 교육 필요
- (교육생) ①기회발전특구 투자(예정)기업에 근무중인 재직자, ②기회발전특구 투자(예정)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(예비 취업자)
 - (참여조건) 특구 투자기업의 ①교육수요에 따른 재직자, ②신규 채용 기준에 부합한 교육생(서류 및 면접 등을 통해 수행기관*이 선발 계획)
 - * 교육생 이탈율을 고려하여 채용인원의 1.1배 이내의 교육생 선발, 교육생 선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, 합격자 통보 등 수행
- 지원제외 대상(수행기관)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기관 및 개인)는 신청 불가
 - *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(NTIS)의 사업과제-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
 - 연구개발기관, 연구(책임)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인 경우
 -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

4

평가절차 및 기준

□ 평가 방법

- (선정평가) 접수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
 - *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
- (이의신청)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평가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 - *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처리하되, 필요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가능

□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

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- 특구別 사업 목표의 적절성, 추진계획의 구체성, 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, 사업의 성과 등 4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
- 특구의 가동시기(시급성) 및 고용규모(교육수요) 등을 우선 고려

< 선정 평가지표 >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
사업목표의 적절성 (45)	○ 목표 설정의 타당성(교육생 수) 및 실현 가능성	10
	○ 특구의 가동시기 등을 고려한 인력수급의 시급성	20
	○ 특구 투자기업의 고용계획 대비 교육수요*의 적절성	15
추진계획의 구체성 (25)	○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	10
	○ 교육생 모집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	5
	○ 교육내용, 수준, 방법 설정 시 기업수요 반영도	5
	○ 지자체 추진 의지(지방비 매칭 등)	5
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 (20)	○ 조직(컨소시엄) 구성 및 추진체계 적절성 * 기관 간 역할 분담 내용 포함	5
	○ 수행기관의 역량 및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* 참여인력의 적정성·전문성, 교육 인프라(시설, 장비 등) 활용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계획의 구체성 등 포함	10
	○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, 산출 근거의 구체성,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	5
사업 성과 및 기대효과 (10)	○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성과관리계획의 적절성 * 성과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사업종료 후 활용 가능성	5
	○ 지역인재 활용,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회발전특구 추진의 기여도	5
합 계		100

* 교육수요 적절성은 '재직자 교육' 보다 '신규 인력양성' 수요를 우선 고려

□ 성과지표

- 시·도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최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
- 아래의 실적지표 및 결과지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, 사업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자율지표 제시 가능

<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성과지표 >

지표명		측정방법	'25년 목표
실적 지표	교육인원 (건)	교육 과정에 참가한 인원수	90% (신청인원의 90%)
	교육 이수율(%)	교육 수료자 수	80% (참여인원의 80%)
	교육 수요조사(건)	수요조사 진행 건수 (교육시작, 종료)	2건
결과 지표	만족도(%)	교육생, 기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	85점 이상
	일자리 창출(건)	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신규 고용 인력 수	'25년도 신규 고용 계획 인원
자율 지표	<i>프로그램 개발(건)</i>	<i>신규 개발되는 교육과정 수</i>	<i>0건</i>
	<i>홍보(건)</i>	<i>동 사업 관련 온·오프라인 홍보 수</i>	<i>0건</i>

5 관련법령 및 규정

□ 근거 법령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(기회발전 특구의 지정 및 지원)

□ 관련 규정
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」,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 요령」,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」 등
- *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6

유의사항

- 동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,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
-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유형자산 및 장비 구입을 할 수 없음
- 과제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포함)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% 이상 계상
-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,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
 - * 관련근거 :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(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), 제40조(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)
-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

7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한국산업단지공단(www.kicox.or.kr) 공지사항 메뉴에서 “기회발전 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(인력양성)” 참조
- 신청방법 : 한국산업단지공단(전문기관)으로 공문 제출
-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별첨서류 각 1부
- 접수기한 : 2025. 2. 3.(월) ~ 2024. 2. 14.(금) 까지

- * 입력 실수,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
 - 접수마감일까지 공문 발송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 인정 불가
 -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·허위로 작성한 경우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소관부처: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
- 전문기관: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팀
(070-8895-7149, juyeon4007@kicox.or.kr)